

예산총칙

2008년도 [4회추경예산]

* 제1조 : 200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 : 천원)

회	계	별	세입·세출 예산 총액	일시 차입 한도액
총	계	계	1,277,905,477	38,337,164
일	반	회	937,398,185	28,121,946
특	별	회	340,507,292	10,215,219
기타특별회계	소 계		211,975,237	6,359,257
	공	유 재 산 특 별 회 계	8,028,270	240,848
	주	택 사 업 특 별 회 계	35,850	1,076
	의	료 보 호 기 금 운 영 특 별 회 계	4,497,319	134,920
	영	세 민 생 활 안 정 기 금 운 영 특 별 회 계	1,115,000	33,450
	장	기 미 집 행 특 별 회 계	1,556,535	46,696
	도	시 개 발 특 별 회 계	29,907,082	897,212
	도	시 기 반 시 설 특 별 회 계	3,695,960	110,879
	교	통 사 업 특 별 회 계	27,851,057	835,532
	도	시 철 도 특 별 회 계	135,288,164	4,058,645
공 기 업	소 계		128,532,055	3,855,962
	상	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48,119,833	1,443,595
	하	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80,412,222	2,412,367

* 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‘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’와 같다. 다만,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.

* 제3조 :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‘채무부담행위조서’와 같다.

* 제4조 :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‘계속비조서’와 같다.

* 제5조 :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‘명시이월사업조서’와 같다.

* 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79,659,736천원으로 한다.

* 제7조 : 200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9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* 제8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